

「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(온나눔사업)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에게도 확대 지원하여, 양육단계에서 가정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이용대상자 추가(안 제3조)
 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함
-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이용 범위 추가(안 제6조)
 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월 1회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이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없음.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취약계층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단계의 가정에 교통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추가된 이용대상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의 경우 월 1회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, 신청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기존 이용대상인 취약계층의 이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유차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